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46,294,434	19,388,833
일반회계	547,055,754	16,411,673
특별회계	99,238,680	2,977,160
공기업특별회계	76,157,406	2,284,722
공영개발특별회계	22,751,706	682,55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906,901	627,20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498,799	974,964
기타특별회계	23,081,274	692,438
의료급여특별회계	407,956	12,23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56,678	4,700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21,562	9,647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4,249,850	127,496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276,922	38,308
수질개선특별회계	11,257,744	337,73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52,793	7,58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290,888	38,727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3,866,881	116,00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558,24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2,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자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지역발전특별회계(지),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사업(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